

조선후기 향교 교육과 丹陽

정 호 훈*

-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향교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 III. 단양의 鄕校 운영과 교육의 실태
 - 1. 단양의 교육과 수령의 향교 관리
 - 2. 향교 운영의 실태 : 『靑衿錄』과 『西齋校生案』
 - IV. 맺음말
-

I. 머리말

단양은 백두대간이 뺨어 내리는 곳에 자리 잡아 산세가 험하고 농사를 지을 땅이 풍부하지 못했다. 산수가 뛰어나지만 궁벽한 곳이기도 했다. 영조대 만들어진 『輿地圖書』에서는 단양을 두고 “토지는 척박하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다(土瘠民貧)”¹⁾라고 정리 하였는데, 이는 단양의 지형과 이곳을 무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곳은 많은 地方官·儒者들이 거쳐 가며 유교를 가르쳤고 또 영남 지방과 가까이 자리 잡은 관계로 이 지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운데 그 나름의 독자적인 儒風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18세기 후반 정조대, 이곳 군수를 지낸 黃鑾²⁾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단양의 입지와 풍속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단양은 비록 궁벽한 곳이지만 하나 산수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先生·長者들이 이곳을 다스렸으니 공자의 遺風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마땅하다. 또 이 땅은 嶠南과 가까워 그곳과 謠俗이 크게 같으니, 사람들이 ‘鄒魯’의 고을이라 부른다.³⁾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K연구 교수

1) 『輿地圖書』, 권2, 丹陽.

2) 황은에 대한 정보는 풍부하지 않다. 『司馬榜目』에 따르면 英祖 38년(1762) 壬午 式年試에서 進士 二等 10위로 합격하였다. 본관은 창원이며 자는 士正, 1730년(庚戌) 생이다. 서울에 거주했다. 아버지는 奉列大夫 行懿陵參奉 黃挺河, 생부는 通政大夫 敦寧府都正 黃運河였다. 단양향교의 소장 자료인 『丹陽郡先生案』에 따르면 1781년(정조 5, 辛丑) 2월에 도입했으며, 1785년(정조 9, 乙巳) 3월에 諭書를 祇迎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 당했다.

3) 『新舊別錄』 新舊別錄序.

단양의 향교는 조선시기 단양 지역에 유교 문화, 양반 문화를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중심 공간이었다. 고려 때부터 禹倬, 鄭道傳과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 자란 곳이었던 만큼 이곳은 이미 유교문화의 전통이 일찍이 형성된 곳이었지만, 조선시기 이 지역의 유교 문화는 아무래도 향교를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양 향교는 조선 건국 후 만들어졌으며 이후 조선이 끝날 때까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했다. 단양 향교의 운영 상황을 적절히 조감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단양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해명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양에는 현재 조선후기의 향교 운영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남아 있다. 이들 자료는 이 시기 단양 지역의 교육 상황을 파악함에 큰 도움을 준다. 조선후기 단양 지역의 교육은 조선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지방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양 지역만의 독자성을 지니며 전개되었다. 하지만, 자료의 제한으로 이 시기 단양 향교, 단암서원의 운영 실태의 전모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이 지역 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丹陽郡先生案』, 『靑衿錄』, 『鄉校西齋案』, 『西齋儒案』, 『丹巖書院院長先生案』 등이 있다.

『단양군선생안』은 역대 단양군수가 누구인지 정리해둔 명단이며, 『청금록』은 단양지역 양반 유생들의 명부, 『향교서재안』과 『서재유안』은 향교에서 공부한 평민 校生들의 명단, 『丹巖書院院長先生案』은 단암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들의 기록이다. 이 시기 지역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관 지워 분석한다면 조선후기 단양 지역의 교육 실태에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자료들이 작성된 것은 대체로 18세기 후반 이후였다.

II. 조선후기 향교의 변화와 정부의 대책

조선에서 향교는 유교 교육의 최 일선 조직이었다. 조선은 건국 후, ‘一邑 一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 郡縣에 향교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 유교 교육 나아가 정치적 敎化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의 成敗·得失은 학교가 진흥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는 믿음에 따른 전국 차원의 제도화였던 것이다.⁴⁾ 그러기에 국가에서는 향교가 정상

4) 鄭道傳의 『朝鮮經國典』의 학교에 대한 생각은 이 시기 향교 설치가 갖는 의미를 압축하여 보여준다. “學校敎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 三代以上 其法大備 秦漢以下 雖不能純 然莫不以學校爲重 而一時政治之得失 係於學校之興廢 已然之迹 今皆可見矣 國家內置成均 以教公卿大夫之子弟及民之俊秀 置部學教授 以教童幼 又推其法 及於州府郡縣 皆有鄉學 置教授生徒 曰兵律曰書筐曰醫藥曰象譯 亦倣置教授 以時講勸 其敎之也亦至矣”.(『三峯集』 권7, 朝鮮經國典上, 禮典, 學校.)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수령의 업무를 집약하여 규정한 守令七事에 ‘興學校’ 항목을 두어 향교 교육을 진흥시키는 일이 수령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수령의 考課에서 학교의 운영 사항은 중요한 평가 항목의 하나였다.⁵⁾ 정부에서는 또 教授와 訓導를 과건하여 이들이 교육을 전담하게 했다.⁶⁾

관부의 규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수를 정하고,⁷⁾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규모에 맞추어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다.⁸⁾ 이 또한 관부의 위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향교에는 16세 이상이면 신분을 막론하고 입학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었다.⁹⁾ 이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軍役 면제였다. 免役의 특혜를 부여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이었다. 조선사회에서 군역은 상당히 고된 부담이었기에 교생들에게 면역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였다.

집권체제의 효율적인 운영, 국가의 지속적인 유지와 유교의 광범위한 보급·확대는 깊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조선 정부에서 유교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임무를 구현하는 향교는 그 자체 절대적 위상을 지닌 공간이었다. 이를테면, 향교의 공간 구성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전국의 향교는 그 입지가 어떠한 공자 및 여러 선현에 대한 祭禮와 학생에 대한 교육의 두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大成殿과 東·西廡의 文廟가 제례의 공간이라면, 明倫堂 東·西齋로 구성된 학교는 교육의 장이었다. 조선에서는 향교를 두고 흔히 ‘尊聖賢 崇儒學’¹⁰⁾

5) 守令七事는 수령의 고과에서 중요한 기준이었다.(『經國大典』 吏典)

6) 교수와 훈도는 『經國大典』에 教授 72명, 訓導 257명 합 329명으로 규정되어 있다.(『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정부에서 교수와 훈도를 과건하기로 한 제도는 16세기 말에 이르러 당사자의 기피로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정부에서는 提督官을 설치하여 향교 교육을 맡도록 했으나 이 또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라졌다.

7) 향교는 향교 소재 관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기부터 적정 인원을 두고 논의가 일다가(『太宗實錄』 권11, 6년 6월 乙酉, “議政府啓定各官鄉校生徒額數田地有差 留守官生徒五十 大都護府牧官四十 祭田皆六結 都護府生徒四十 知官三十 祭田皆四結 縣令監務生徒十五 祭田皆二結 其中教授官差遣留守官 廩田五十結 大都護府牧官四十結 府官知官十五結 無教授官府官以下各官 亦給十結”) 『經國大典』에 留守官 90명, 大都護府와 牧 70명, 都護府 70명, 縣 30명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을 額內 校生이라 한다.

8) <표> 鄉校田(學田)·노비 지급 액수 단위 : 結(토지), 명(노비)

관부 \ 鄉校田 ·노비	鄉校田		奴婢
	태종 6년 윤7월 정축	大典續錄(성종)	經國大典
留守官	50	10	30
大都護府·牧	40	10	25
都護府	30	10	20
郡	10	7	10
縣令·監牧	10	5	10

9) 『經國大典』, 禮典, 生徒, “府·大都護府·牧 儒學各九十 年十六歲以下 不在額內 都護府·郡·縣同”.

10) 『純祖實錄』 권27, 25년 6월 戊午.

‘俎豆·絃誦’의 장소¹¹⁾로 불렸는데, 이는 향교의 특성에 대한 압축적 표현이었다. 이곳에 文廟를 설치, 孔子 및 여러 선현에 대한 제례를 행하고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행하는 것은 이곳이 단순히 교육만을 행하는 장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교는 조선사회에서 그 어떤 곳보다 신성하고 권위를 지닌 장소였다.

조선후기에 들어 향교의 성격, 향교 운영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교수와 훈도의 파견이 중단되었다. 토지의 지원이 줄어들었으며,¹²⁾ 노비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실제 노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향교도 생겨났다. 이를테면 진해 향교에는 현종 5년 현재 1구의 노비도 없었으며,¹³⁾ 통진현 향교에도 영조 24년 시점에 노비가 존재하지 않았다.¹⁴⁾ 영세한 지역에 위치한 향교일수록 노비가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는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가 갖는 위상이 약화된 점이다. 이는 조선사회에서 書院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¹⁵⁾ 1657년(효종 8) 8월 충청감사 徐必遠이 올린 장계는 17세기로 들어와 향교와 서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鄉校와 書院에는 輕重의 차이가 있다. 지방에 거부하며 선비라 이름 하는 사족으로서 재주와 식견이 있는 자들은 서원에 적을 두고 院儒라고 불리는데, 향교를 店舍로 보고 校生을 노예처럼 대한다.¹⁶⁾

지방 사회에서 향교와 서원의 위상이 상하 관계로 바뀌었으며 院儒와 校生의 위치 또한 대등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위상 약화는 향교의 학생 곧 교생의 신분 변화와도 맞물려 있었다. 16세기 후반을 넘어가며 향교가 양민들의 피역처로 구실하게 되자 교생들은 많은

11) 『正祖實錄』 권8, 3년 11월 丁未.

12) 향교전의 면적은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에 들어 조금 줄어들었다. 군 단위의 향교는 5結로까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17세기 이후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면서 향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약화되고 또 서원이 발달하게 되면서 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 -湖南을 중심으로-』, 『韓國史學』 5, 1983)

관부 \ 시기	태종 6년 윤7월 정축	大典續錄(성종)	續大典(영조)
留守官	50	10	7
大都護府·牧	40	10	7
都護府	30	10	7
郡	10	7	5
縣令監牧	10	5	5

13) 『學校謄錄』, 현종 5년 윤6월 10일조.

14) 『學校謄錄』, 영조 24년 8월 2일조.

1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70쪽.

16) 『孝宗實錄』, 권18, 8년 6월 壬辰.

경우 양반에서 양민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향교에는 많은 양민들이 투숙, 법정 정원 외의 교생들도 다수 생겨났다. 양반들은 교생이 되지 않아도 군역이 면제되는 특권이 확립되어 있었고, 아울러 이 시기에는 과거 공부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書院, 書齋가 늘어났기 때문에 향교에서 공부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또 학교에 대한 여러 제약과 간섭, 하층 신분과 함께 섞여서 공부한다는 수치심 등도 양반들이 교생 되기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했다.¹⁷⁾ 한편, 양반의 庶孽들도 향교에 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 졌다.

향교 학생으로 양민·서얼들이 늘어나면서 향교의 교생은 신분에 따라 東齋生과 西齋生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동재와 서재는 본디 학생들의 기숙처였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신분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다른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유형원의 『磻溪隨錄』 기사는 17세기 중엽, 향교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이 자료에 보이는 庶類를 다른 자료에서는 雜類라고도 하는데, 서얼 혹은 평민을 가리켰다.

지금 외방의 향교에 양반은 東齋에 거처하고 庶類는 西齋에 거처한다. 따라서 서재가 비었다고 해도 양반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동재가 비었다고 해도 庶類는 들어갈 수 없다.¹⁸⁾

동재와 서재가 신분으로 구별되어 운영되는 양상은 18, 9세기 내내 고정되어 있었다. 안정복의 『雜同散異』에서 “서재 교생은 閑散庶孽 및 民의 俊秀者를 校生으로 택하는데 이들은 서재에 거처한다.”¹⁹⁾고 한 것은 그 단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양반들이 향교를 교육의 장으로 크게 활용하지 않으면서 향교가 가진 교육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양반들이 향교의 출입을 도외시하거나 향교와의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었다. 유수원이 『迂書』에서 “서울과 지방에는 모두 『靑衿錄』이 있어 사족의 자제들을 선택하고 있고 또 서재를 설립하여 서민의 자제를 거처케 하고 있다.”²⁰⁾ “유생이 『청금록』을 만들어 마음대로 입학하고 있다.”²¹⁾고 묘사한대로, 양반들은 『청금록』이라는 특별한 명부를 만들어 자신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여전히 향교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동재의 유생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청금록』은 17세기 전반, 校生 考講이 강화되고 또 향교 入籍者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校生 考講은 불법으로 투숙된 교생의 수를 제한하고 양역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나온 대책으로, 인조 4년에는 ‘軍政變通事目’을 제정, 사족과 비사족을 막론하고 落講하면 3년 동안 收布하여 군역을 유예하고 3년 뒤에 다시

17) 윤희면, 『朝鮮後期 鄉校 研究』, 일조각, 1990, 10쪽.

18) 『磻溪隨錄』 권9, 敎選之制.

19) 『雜同散異』 鄉校約令.

20) 『迂書』 권2, 論學校補選之制.

21) 『迂書』 권2, 論揀門閥之弊.

낙강하면 그때는 균역을 부과한다고 하였다.²²⁾ 그리고 병자호란을 겪은 뒤인 인조 22년 이후에는 落講校生을 武學으로 강정한다는 것으로 보다 강화하였다.²³⁾

양반으로서는 여기에 상당한 부담을 져야 했다. 양반들은 자연 향교를 피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儒生은 반드시 入籍한 후에 과거를 허락 한다”²⁴⁾는 조치를 내려, 양반들의 향교 이탈을 제한하였다. 양반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양반만의 독자적인 교생 명단인 『청금록』을 만들고 관리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금록』은 정부의 강한 향교 대책, 그리고 양반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요컨대, 조선후기에 오면 향교는 양반의 동재생과 양민·서얼의 서재생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는데, 양민들에게 서재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정부에서는 인조대 적극 추진되었던 교생의 考講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펼치지는 못했다.²⁶⁾ 이곳은 양민들에게는 중요한 피역처였으며, 정부에서 양역 대책을 세울 때마다 향교에 불법으로 투숙한 양민들의 색출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항상 법정 정원 외의 양민들이 교생으로 등록되어 양역을 피해갔다. 또 어떤 경우에는 향교에 일정량의 돈을 바치고 평생 면역을 하기도 했다.²⁷⁾ 이곳으로 피역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양민 가운데서도 가산이 조금 넉넉한 자, 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또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었다. 17세기에 교생을 두고 “교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世族인 것이 아니라 평민보다는 조금 낮고 사족보다는 조금 못한 자들”²⁸⁾이라고 한데서도 그들의 사회적 존재양태를 알 수 있지만 18·9세기의 교생들도 대체로 그러했다. 이를테면

鄉民 가운데 넉넉하고 교활한 자는 모두 문득 官屬과 체결하여 鄉校와 書院에 投入한다.²⁹⁾

22) 『仁祖實錄』 권13, 4년 윤6월 壬寅 ; 『仁祖實錄』 권14, 4년 8월 癸卯 ; 『仁祖實錄』 권14, 4년 12월 壬寅.

23) 윤희면, 앞의 책, 1990, 136쪽.

24) 『受教輯錄』 권3, 禮典 科擧條. 『續大典』에도 “凡外方科試儒生 必以入籍者許赴”(권3, 禮典 諸科)

25) 윤희면은 『청금록』 입안을 둘러싸고 양반과 기타 신분간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또 비양반의 입안을 허락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청금록』이 양반의 신분을 대변해주는 전유물이 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세기가 되면 『청금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윤희면, 앞의 책, 1990, 41쪽) 이 견해가 전국 향교의 『청금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26) 영조대 개성유수 趙載浩의 경우, 시험을 보아 儒案에 참여한 3천여 인(案內生) 가운데 1천 6백여 명을 출척하고, 유안에 참여하지 않은 3천여 인(案外生) 가운데 1천 4백여 명을 充丁했다는 기록이 있다.(『英祖實錄』 권68, 24년 10월 甲辰) 이로써 본다면 고생 고강과 이를 통한 교생 정리 작업은 언제든지 시행 가능한 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선사회 전역에서 실제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

27) 『正祖實錄』 권12, 5년 11월 丁卯日 기사에는 “民願에 따라 돈 20냥을 바치고 일생 동안 免役되는” 願納校生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원납교생의 문제는 숙종 대에도 논의되고 있었다.(『備邊司謄錄』 50, 숙종 25년 9월 12일)

28) 『仁祖實錄』 4년 11월 庚寅.

거나,

무릇 백성 가운데서 약간 稍實하고 狡猾한 자들은 대부분 圖避한다. 官에는 投屬한 軍官이 있고, 鄕校에는 투속한 校生이 있다.³⁰⁾

는 표현은 정부 측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지만, 역으로 이 시기 양민 가운데 재력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면역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의 투속 교생이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18·9세기의 자료들에 흔히 나타난다.³¹⁾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후기의 향교는 정부와 향촌민, 양반과 평민, 양반 내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이 직접 드러나는 곳이었으며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곳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향교는 교육 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 祭禮 기능만 존속하는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³²⁾ 실제 교육을 담당하던 교수와 훈도가 제도적으로 소멸하였고 규정된 교과 과정에 따른 학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곳이 유교 이념을 펼치는 중심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유교적 제례의 정례적 실행 자체가 유교 이념을 펼치는 의식이었거니와, 조선후기 정부에서는 유교적 이데오로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향교 조직을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영·정조대 정부의 『소학』 교육 강화는 그 중요한 실례이다. 조선사회에서 『소학』 학습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중시되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7세기 이후였으며, 李珥의 『小學集註』가 널리 보급되는 18세기가 되면 『小學』 학습은 명실상부하게 유교의 기초 학습으로서 자리를 잡아갔다.³³⁾ 영·정조 정부 또한 『소학』의 학습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으며 그 중심 공간은 향교였다.

영조대 향교에서의 『소학』 교육 강화책은 1758년(영조 23) 8월부터 구체화되었다. 이때 淫獄이 일어나자 영조는 교화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淫風이 방자하게 행해지는 것은 학교의 政事가 폐기되어 『小學』의 가르침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 서울의 太學·四學과 外方의 鄕校·書院에서

29) 『正祖實錄』 권23, 11년 5월 庚午.

30) 『純祖實錄』 권27, 25년 11월 壬寅.

31) 1787년에도 양역의 폐단을 이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산이 조금 넉넉한 자는 갖가지로 뇌물을 써서 혹 鄕案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校案에 오르기도 하면서, 한번 교안이나 향안에 오르게 되면 여러 세대 동안 액을 면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閑丁이 날로 줄어들어 소민들만 치우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만약 鄕校와 書院의 餘額을 도태시켜 없애고 함부로 올려차임을 도모하는 폐단을 엄중히 방지한다면, 한 마을에서 5, 6명의 良丁을 얻을 수 있고, 한 坊에서 수십 명의 양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이로써 저것을 대신한다면 거의 전처럼 텅빈 軍伍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正祖實錄』 권23권, 11년 4월 癸丑)

32) 윤희면, 앞의 책, 1990, 51쪽.

33)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韓國史學報』 31, 2008 참조.

모두 ‘小學講’을 常規로 삼도록 하였다.³⁴⁾ 이때 각급 교육기관에서 읽은 『소학』은 1755년(영조 20)에 편찬 간행된 『小學訓義』였다.

영조의 ‘소학강’ 명령은 어느 기간 동안 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주에 살던 權相一의 일기에서 1759년(영조 24) 4월 18일, ‘소학강’의 일로 향교에 모인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고³⁵⁾ 성주에 살던 晚覺齋 李東汲의 행적에서 1761년(영조 26), 方伯이 조정의 명령으로 ‘소학강’을 시행하자 여기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등을 볼 수 있다.³⁶⁾ 이들 기록은 『소학』 고강이 지방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1765년(영조 30), 서명응은 영조가 『小學訓義』를 간행한 뒤에 諸道の 주현에서 小學生을 課試하여 巡營에 보고하고, 순영에서 禮曹에 보고 하리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향교를 통한 ‘소학강’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³⁷⁾

정조대에 들어 와서도 향교에서의 『소학』 교육은 강조되었다. 1779년(정조 3)의 사례는 향교의 『소학』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정부에서는 朴天行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향교에서 『소학』을 강의하도록 하였다.³⁸⁾ 이 내용은 전국의 각 군현에 하달되었는데, 목천현감이던 황윤석의 기록에 따르면, 수령이 향교로 하여금 현내 8개 면의 訓長을 정하고 전체 8개 면을 동서로 나누어 西面은 鄕校에서 東面은 道東書院에서 『소학』을 강의하였다고 한다.³⁹⁾

정조대 향교에서의 『소학』 교육 그리고 그와 연관된 교화의 노력이, 영조 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가지고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조는 교화 관련 서적을 계속 편찬, 이를 향교에 내려 보내며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학훈의』를 고증한 『소학』을 새로 편찬하고⁴⁰⁾ 『鄕禮合編』⁴¹⁾ 『五倫行實圖』를 간행하여 전국의 군현에 보급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영·정조대의 향교를 통한 유교 학습의 강화, 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노력은 19세기에 오면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세도정치기의 느슨해진 기강이 향교

34) 『英祖實錄』 권66, 23년 8월 壬戌.

35) 『淸臺日記』 下, 戊辰 十八日. “見咸昌 南振伯及申汝重書 修答以晦日定小學講 會于鄕校請來事也”.

36) 『晚覺齋集』 卷6, 遺事[李芳運]. “府君以英廟戊午九月十四日 生於漆谷上枝里第……十三歲時 方伯以朝令設童蒙小學講 方伯問以父子有親之義 府君對曰以舜之所處而至於底豫 亦不過於克盡有親之道也 聖人之必以一親字爲教者 豈非開示天下爲人父子之義乎 方伯稱歎不已”.

37) 『英祖實錄』 권82, 30년 7월 庚辰. 이때의 ‘소학강’이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후반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학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실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8) 여기에 대해서는 노혜경, 『朝鮮後期 守令 行政의 實際 - 黃胤錫의 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혜안, 2006, 129~130쪽 참고.

39) 『頤齋亂藁』 6, 本縣鄕校勤講小學下帖, 1779년 11월 3일 癸未.

40) 『弘齋全書』 165, 日得錄5, 文學5.

41) 『正祖實錄』 권46, 21년 6월 辛未 ; 『正祖實錄』 권47, 21년 7월 丁亥.

운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향교를 거점으로 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유지하려는 지방 세력이 정부의 향교 대책에 대해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순조대 정부에서 豊德을 松都에 합병하고 향교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풍덕의 유생들이 향교를 다시 세운다는 여론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판을 문은 곳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정부 조치에 반발하였다.⁴²⁾ 이 일은 결국 주동자들이 절도 充軍되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⁴³⁾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의 핵심 기구 통폐합을 두고 지방 유생들이 적극 반대하는 점을 보이는 점에서는 희유한 일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조선후기 사회에서 향교는 조선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유교 이념 보급의 제 일선에 있는 기구였다. 향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러나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 향교는 조선후기 사회에 구축된 모든 이해의 관계망이 작동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 조선후기의 향교는 정부와 향촌민, 양반과 평민, 양반 내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이 직접 드러나는 곳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 정치적 의견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했다. 양민·서류들은 이곳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불리한 지위를 넘어설 입지를 마련하고자 했고, 정부와 양반 사족들 또한 이곳을 독자적으로 장악하여 권력의 근거를 확보하려 하였다. 향교는 교육 기관, 유교 이념의 전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사회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가 응축되고 또 분출하는 그러한 곳이었다.

Ⅲ. 단양의 鄕校 운영과 교육의 실태

1. 단양의 교육과 수령의 향교 관리

조선후기 단양 지역에서 교육의 증추를 이루는 기구는 단양 鄕校와 丹巖書院이었다. 이 지역의 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향교는 1415년, 군수 李作에 의해 창건되었다가⁴⁴⁾ 16세기 중반, 군수 黃俊良 재임 시절에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明倫堂을 중창했다.⁴⁵⁾ 17세기 이후로도 단양 향교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지방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단암서원은 현종대의 군수 韓命遠⁴⁶⁾ 재임 시절(1660~1663) 처음 만들어진 뒤 賜額書院이 되었

42) 『純祖實錄』 권27, 24년 4월 丁酉.

43) 『純祖實錄』 권27, 25년 4월 丙子.

44) 『丹陽郡先生案』,

45) 『錦溪集』 권4, 丹陽鄕校重創記.

46) 『丹陽郡先生案』에 의하면, 경자년 10월 초1일에 부임하여 계묘년 4월 14일에 임기를 마쳤다고 한다.

다. 단양의 유일한 서원으로, 禹倬과 李滉을 並享하였다. 우탁은 이 지역 출신으로 고려말 성균관 재주를 지낼 정도로 명망이 있었고, 이황은 조선의 儒宗과 같은 인물로 이 지역의 군수를 지내기도 했다.⁴⁷⁾ 이 시기 단양에 단암서원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인근의 군현에서 여러 서원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교된다.⁴⁸⁾

서로 다른 두 성격의 교육기구는 운영주체가 다르고 설립 목적이 달랐으므로 운영하는 방식,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두 기구는 조선 말기까지 어떻게 존속하였을까? 우선 단암서원을 보도록 하자.

단암서원은 19세기에 와서는 그다지 충실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암서원의 운영상은 『丹巖書院院長先生案』(이하, ‘원장선생안’)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는 山水軒 權震應이 원장으로 있을 때 작성하였는데, 1784년(정조 8, 甲辰) 당시 원장이던 趙靖世가 붙인 발문이 붙어 있다.⁴⁹⁾ ‘원장선생안’에는 宋浚吉부터 權尙夏 李箕鎭 金元行 權震應 金亮行 金鍾厚 趙靖世 金履安 閔鍾顯 趙鎭寬 吳載紹 李采 趙鍾永 李光文 尹定鉉까지 모두 16명의 원장 명단이 실려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단암서원 원장을 대체로 노론계 인물들이 역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장선생안’은 조정세까지는 역대 원장별로 이름, 生年·字, 本貫·號를 三段으로 나누어 충실히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이름만 적거나, 이름과 본관·호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李采와 李光文은 이름만 적혀 있어, 생년이 어떻게 되는지 자는 무엇인지 본관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다.⁵⁰⁾ ‘원장선생안’의 기록 상태로만 본다면 19세기에 들어와 단암서원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⁵¹⁾

이에 비해, 그 가진 형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은 향교였다. 이 시기 향교는 세워질 당시에 의도했던 교육적 기능은 많이 약화되어 있었지만, 변함없이 수령에 의해 관리되며 공

47) 『丹陽郡先生案』, 李滉條, “嘉靖二十七年戊申正月赴任 官到判中樞 諡文純 本郡有書院”

48) 이 외, 선조대의 효자 雲溪 申孟慶을 향사한 丹溪祠도 들 수 있다. 1833년(순조 33)에 세워진 후 단암서원과 함께 이 지역 유림들의 구심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雲溪遺事』)

49) 『丹巖書院院長先生案』, 跋, “蓋本院曾無院長先生案矣 大休叔父丈益文甫曾任是院 始成冊子 請跋于山水軒 而未及成”. 조정세는 한때 단양 군수를 지냈던 인물이다. 1764년(영조 40)에 감찰로 있다가 단양군수로 임명되었으며, 1769년 5월 22일 파직되었다.

50)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에서는 이채와 이광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채와 이광문은 이들일 가능성이 크다. 李采(1745)~1820년)는 본관은 牛峰, 자는 季良, 호는 華泉이며 李緯의 손자이다. 1774년(영조 50)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徽寧殿 참봉에 제수되었다. 호조참판, 한성좌우윤 및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시호는 文敬이다. 李光文(1778년~1838)은 본관은 牛峰, 자는 景博, 호는 小華로, 李緯의 증손이며 호조참판 李采의 아들이다. 1801년(순조 1) 司馬試에 합격하고, 1809년에 천거로 승정원주서와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어 전라감사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簡이다.

51) 단암서원은 고종대 서원철폐 시 파괴되었다. 『丹巖書院院長先生案』에 기록된 마지막 원장은 윤정현인데, 아마도 그의 재임 시절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했다. 수령의 행정에서 향교 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의 하나였고 이는 단양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양군수는 그 지위 상 단양의 학교 교육, 구체적으로는 단양 향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일단, ‘守令七事’와 관련하여 그의 역할을 살필 수 있다.

‘수령칠사’는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의 일곱 가지를 말하는데, 군현 통치를 책임졌던 수령이 재임 중 역점을 두어 해야 했던 일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인 ‘학교흥’은 군현의 교육 진흥 곧 향교를 적절히 운영하여 교화를 진작시킬 것을 강조하는 규정이다.⁵²⁾ 수령은 재임 중 이러한 일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으므로⁵³⁾ 어느 항목이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

향교의 정상적인 관리와 운영은 수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수령 到任 후 곧바로 향교의 文廟를 찾아 ‘謁聖’ 의식을 행하는 관례,⁵⁴⁾ 또 봄·가을로 행하는 釋奠祭에서 수령이 初獻官의 역할을 맡았던 사실은 수령 행정에서 향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향교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수령들이 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제사를 지내면서 守令이 몸소 지내지 않거나, 제사에 혹 그릇을 더러운 것을 쓰거나, 또는 제사에 마치는 음식을 혹 쓰다 남은 것으로 쓰거나, 鄉校의 건물[間閣]을 수리하지 않거나, 敎官을 대접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 경우도 관찰사의 평가 항목[殿最]에 참작하는 사항이었다.⁵⁵⁾

수령의 인수 인계 사항에도 향교 관련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었다. 향교 건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령은 이를 보수하고 또 해유 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했다.⁵⁶⁾ 또한 수령 임기가 끝나 解由를 작성할 때에도 향교의 건물,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書冊·祭器·鋪陳 등을 일일이 기록하여 인계하도록 되어 있었다.⁵⁷⁾

52)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목민서 『先覺』에 나오는 수령칠사의 ‘興學校’ 관련 내용에서 ‘興學校’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學校興第三. 學學也 校校也 設爲學校 所以學於斯 教於斯 使斯民一受於聖人之道也 夫所謂學者何 學以復仁義禮智之性 所謂教者何 教以盡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倫也 此三代之所共 而其要有五 一曰 尊聖廟 崇奉盡其禮儀 享祀極其齊明 修改致其誠勤 俾有觀感之化 二曰 敬士林 接待存其體貌 辭氣推其溫恭 行藝導其純謹 俾有遜讓之豐 三曰 崇勸獎 志意戒其暴棄 講誦課其勤怠 詞章試其工拙 俾有激勵之效 四曰 戒遊逸 酒色禁其流蕩 博奕節其猥雜 貨寶斥其貪黷 俾有謹飭之法 五曰 關異端 天理明其公平 人心解其誣惑 妖言斥其私邪 俾有歸正之道也”.

53) 『經國大典』 吏典, 考課, “每歲季 本曹具諸司官員實仕及雜故 觀察使具守令七事實跡啓聞(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 ; 『經國大典』 吏典, 考課, “褒貶居下等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敘《增》經二年, 限二十四朔”

54) 16세기 중반에 유희춘이 작성한 『治縣須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治縣須知』, 謁聖興學第六, “到任翌日 以時服黑團領謁聖 仍賜校生酒 校生之有文行者 養育而勸獎之”)

55) 『經國大典』, 禮典, 雜令, “凡祭祀 守令或不躬行 器皿或用陋汚 奠物或用殘餘者 鄉校間閣不修葺 敎官供饋不用心者 觀察使檢以憑殿最”.

56) 『經國大典』, 工典, 營繕, “外方公廡 啓聞後營繕 ○諸道鄉校間閣 守令隨毀隨補 解由錄授受<鋪陳同> 觀察使巡行時糾檢”.

수령의 임무가 이러했기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일, 향교 건물을 수리 보수하며 그 형세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는 일, 교생의 입학과 퇴학 등 학생 명부를 관리하는 일은 수령 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역대 단양 군수들 또한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는데 『丹陽郡先生案』에서 향교에 관한 이들의 움직임은 일부 살필 수 있다.

『단양군선생안』은 鄉序堂에 봉안되어 있던 ‘邑先生案’이 작성한 뒤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훼손되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없게 되자 座首 張師德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1798년(정조 22, 嘉慶 戊午)에 수정 보완하여 새로 작성했던 자료이다.⁵⁸⁾ 당시 단양의 군수로 재임 중이던 이는 黃櫨이었다.⁵⁹⁾ 이때 정리된 ‘선생안’에는 조선 초부터 정조대까지 재임했던 군수의 명단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조선전기에 재임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부실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수령들에 가서야 내용이 비교적 충실해진다. 한편, ‘선생안’에는 정조대 이후 수령을 지낸 인물들의 인적 사항도 기록해 두었는데, 이는 장사덕이 만든 뒤 계속 추가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⁰⁾ 역대 단양 군수들의 행적에서 향교의 건물을 重建·重修하는 등 향교와 관련된 사업을 벌인 인물들은 『단양군선생안』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朴弼傳⁶¹⁾ : 1737(丁巳, 영조 13) 12월 30일 도임, 1740년(庚申, 영조 16) 12월 11일 執義로 移拜. 향교의 聖殿, 東西 兩廡, 齋舍, 祭器庫, 典祀廳을 중수.

趙靖世⁶²⁾ : 1764년(甲申, 영조 40) 9월 29일 제배. 1769년(己丑, 영조 45) 5월 22일 임무 마침. 明倫堂 중건, 聖廟 중수, 鄉廳 創建.

57) 『經國大典』戶典, 解由, “官吏遞代時 所掌之物無虧欠者 給解由……守令則私庫雜物·城子·公廨 及鄉校間閣·書冊·祭器·鋪陳等物 並錄傳掌”.

58) 『丹陽郡先生案』, “鄉序堂奉安邑先生案 以年久萬無考覽之道 故不勝慨然 嘉慶戊午改修 正以爲後人閱識焉 座首張師德”. 鄉序堂은 鄉廳의 다른 이름으로 鄉射堂이라고도 한다. 이 기록은 선생안의 앞머리 빈 구석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때는 황은이 군수로 있을 때인데, 佐幕 곧 별감은 張德潤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사덕은 또 황은보다 조금 늦게 군수를 지낸 趙景鎭이 재임 중일 때에도 首幕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후반, 단양 지역에서 장사덕은 많은 일을 했다. 황은이 군수로 재임 중이던 1784년(甲辰), 장사덕은 新鄉과 舊鄉이 혼재되어 기록된 ‘鄉案’을 정리, 『新舊別錄』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新舊別錄』, 新舊別錄序)

59) 黃櫨에 대해서는 주 2) 참조.

60) 장사덕이 정리한 이후 추가로 수록된 내용은 글자체 등에서 장사덕이 정리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61) 朴弼傳 : 1687년(숙종 13)~1752년(영조 28). 본관은 潘南. 자는 景賚, 호는 省菴. 朴世采의 손자이며, 水運判官 泰興의 아들이다. 世子侍講院諮議와 翊衛司洗馬, 사헌부 執義, 成均館祭酒 등을 지냈다.

62) 조정세는 1769년(영조 45), “丹陽郡守 趙靖世는 오로지 貪婪만 일삼고 있으니, 仕版에서 지워버리라”는 대사헌 宋瑩中의 탄핵을 받았으며(『英祖實錄』 권112, 45년 5월 庚子) 이 일로 파직되었다.(『丹陽郡先生案』, 趙靖世條, 己丑五月二十二日 自京啓罷). 또, 정조대에는 홍계능과 홍계희의 당으로 몰려 탄핵을 받았다.(『正祖實錄』 권7, 3년 1월 癸丑).

趙景鎮 : 1794(甲寅, 정조 18) 5월에 현릉원령에서 옮겨옴. 1797년(丁巳, 정조 21) 12월 20일 청풍부사로 이배. 1796년(丙辰) 봄에 향교 神門 改建, 明倫堂 重修.

尹鍾烈⁶³⁾ : 1814년(甲戌, 순조 14) 12월 到任. 1819년(己卯, 순조 19) 6월 이천부사로 옮김. 1818년(무인) 봄에 大成殿 중수.

향교의 중수·중건이 대체로 영조 정조 순조 3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 행정의 강화, 지방에서의 교육 진흥에 많은 힘을 쏟았던 이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들 수령들이 이력에서 특기할만한 점 하나는 조정세를 빼고는 모두 단양에서의 임기를 마치고는 승진했다는 사실이다. 단양 군수 가운데 파직 당하거나 임기를 마친 후 타 군현으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이는 무척 흥미롭다. 향교를 중수하는데서 드러나는 적극성과 그들의 官運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조선후기 단양 지역 교육의 중추를 이루는 곳은 향교였다. 단양군수는 향교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자였고 이와 연관하여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향교의 정상적 유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현재 단양 군수의 단양 향교 운영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단양군선생안』에 기초하여 그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 볼 수는 있었다. 영조 정조 순조 세 국왕 대에 향교의 보수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했다. 『청금록』과 ‘교생안’을 통해 단양 향교의 다른 모습을 살피도록 하자.

2. 향교 운영의 실태 : 『靑衿錄』과 『西齋校生案』

단양의 향교 운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청금록』이다. 『청금록』은 현재 序文이 있는 책과 없는 책, 두 종류가 남아 있다. 양반 신분 향교 교생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서문이 실려 있는 책자를 먼저 살피도록 하자.

이 책에는 辛亥年에 작성한 명단,⁶⁴⁾ 그리고 壬子年,⁶⁵⁾ 癸丑年⁶⁶⁾에 추록한 명단이 같이 실려 있다. 수록된 인물은 모두 167명이다. 첫 머리의 「靑衿錄序」는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청금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해준다. 丹巖書院과 丹溪祠의 유품이 남아 있

63) 윤종렬 : 1757~?. 해평 윤씨로 尹台東의 아들이다. 자는 士應이며 27세 되던 1783년(정조 7) 式年 試에 進士에 급제하였다.(『司馬榜目』)

64) 李學彦(原州人, 字 道理, 壬寅生) 등 59명이 등재되어 있다.

65) 李民墅(原州人, 字 成徐, 乙丑生) 등 71명이 등재되어 있다.

66) 金鎔(淸風人, 字 和汝, 戊寅生) 등 37명이 등재되어 있다.

는 이 지역에서, 謹勅하는 士들이 서로 敬勅하고 같은 목소리로 協應하며 世道를 扶植하기에 노력한다면 風化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⁶⁷⁾ 책의 맨 뒤에는 내용의 追錄이 “崇禎紀元後四癸丑四月初八日”에 이루어졌다고 적어 두었다. 이때는 1853년(철종 4)이 된다. 이 기록, 그리고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의 활동 기간⁶⁸⁾을 『丹陽郡先生案』에서 찾아본다면 『청금록』이 처음 작성된 辛亥年은 1851년(철종2)임을 알 수 있다. 신해년조에 실려 있는 李志彦⁶⁹⁾ 張師恭⁷⁰⁾은 현종~철종 년간에 座首와 別監을 지냈던 인물들이다. 한편, 이 책에 등재된 인물들의 본향은 대부분 原州, 丹陽, 鎭川, 淸風 등이다. 그러니까 이 청금록은 1851년(신해), 1852년(임자), 1853년(癸丑) 3년간 연속해서 작성한 자료가 된다.

서문이 없는 두 번째의 『靑衿錄』은 丙午年에 작성된 자료,⁷¹⁾ 그리고 癸卯年,⁷²⁾ 戊午年,⁷³⁾ 戊子年,⁷⁴⁾ 辛卯年⁷⁵⁾ 등 네 차례에 걸쳐 추록된 자료를 실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모두 222명이다. 이 가운데 병오년조에 수록된 인물의 경우에는 성명만 있을 뿐, 生年·字·本鄉과 같은 기초 정보가 없다. 병오년조 기록이 이처럼 부실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알 수 없다.

작성 년대가 문제가 되는데, 비밀의 열쇠는 癸卯年 이후의 추록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癸卯年條에 추록된 인물 중에는 張德潤, 張師德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丹陽郡先生案』에서 정조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확인된다.⁷⁶⁾ 그러므로 癸卯年은 1783년(정조 7)으로 여겨진다. 계묘년을 이와 같이 확정할 경우, 병오년은 이보다 앞서므로 1726년(영조 6) 혹은 그 이전의 어떤 해에 해당한다. 추록한 무오년은 1798년(정22), 무자년은 1828(순조 28), 신묘년은 1831년(순조 31)이 된다. 그러니까 서문도 없고 연도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청금록』은 서문이 실려 있는 책보다 더 앞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 된다.

67) 『靑衿錄』, 靑衿錄序.

68) 『靑衿錄』의 신해년조에는 張師恭, 李志彦, 李民赫 등 59 명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장사공, 이지언, 이민혁 등은 『단양군선생안』에서 모두 현종·철종 대에 좌수, 별감과 같이 향청의 소임을 맡아 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이들이 생존했던 시기는 현종대와 철종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들어 있는 신해년은 1851년에 해당한다.

69) 字는 道心이며 壬寅年生이다. 『단양군선생안』에 李游의 군수 시절[1831년(순조 31, 辛卯)~1833년(순조 33, 癸巳)], 김인근의 군수 시절[1837년(현종 3, 丁酉)~1838년(현종 4, 戊戌)], 이의익의 군수 시절[1840년(현종 6, 庚子)~1841년(현종 7, 辛丑)]에 首幕을 지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0) 字는 敬之이며 壬寅年生이다. 『단양군선생안』에 金亨淳의 군수 시절[1851년(철종 2, 辛亥)~1852년(철종 3, 壬子)]에 佐幕을 지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1) 宋澤(常山人) 등 37명이 수록되어 있다.

72) 張世遊(丹山人, 字 藝叔, 庚寅生) 등 68명이 등재되어 있다.

73) 張宗楸(丹山人, 字 時聖, 辛未生) 등 36명이 등재되어 있다.

74) 李民基(原城人, 字 汝恭, 戊戌生) 등 45명이 등재되어 있다.

75) 張輔參(丹山人, 字 啓賢, 庚申生) 등 36명이 등재되어 있다.

76) 장덕운은 黃檟 군수 시절[1781년(정조 5, 辛丑)~1785년(정조 9, 乙巳)]에 佐幕을, 장사덕은 趙景鎭 군수 시절[1794년(정조 18, 갑인)~1797년(정조 21, 丁巳)]에 首幕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현재 두 종류로 남아 있는 단양의 『청금록』은 18세기 후반부터 1850년 대까지의 단양 지역 양반 교생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⁷⁷⁾ 이 책자들은 조선후기 단양지역에 거주했던 주요 양반들의 명단을 망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인물들 가운데 일부는 鄉廳의 鄉任으로 활동하기도 했다.⁷⁸⁾

단양의 향교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향교의 학생들, 곧 校生이다. 단양 향교의 교생과 관련한 자료는 4종의 『鄉校西齋案』, 그리고 『(甲午式)西齋儒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명단들은 각기 시기를 달리하며 작성되었다. 단양향교에는 다른 지역의 향교들과 마찬가지로 都 有司·掌議·色掌과 같은 향교의 임원, 그리고 교생으로 구성된 가운데, 講學과 祭禮의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되었을 것이다. 현재 도유사 등 校任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향교서재안』은 각기 壬申年, 丙子年, 己卯年, 辛巳年에 작성되었다. 이들 서재안의 干支는 그 자체로는 해당 년도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려 주지 않으나, 1894년에 작성된 것이 확실한 『(甲午式)西齋儒案』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 ‘서재안’의 연도를 살펴보면 모두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자료임을 알 수 있다. 『(甲午式)西齋儒案』에 기재된 인물이 다른 년도의 ‘서재안’에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신년은 1872년, 병자년은 1876년, 기묘년은 1879년, 신사년은 1881년에 해당한다.

1872년(壬申)의 『향교서재안』에는 朴允淸 외 58의 명단이 등재되어 있다.⁷⁹⁾ 이 가운데 신상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老除’, ‘故’, ‘喪頤’, ‘自退’ 등 그 연유를 표기해두었는데,⁸⁰⁾ 해당자는 모두 12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46명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서재안의 맨 마지막 명단이 끝나는 곳에 ‘官’자를 쓰고 담당자의 手決을 해둔 점이다. 단양군에서 교생의 명부를 꼼꼼히 관리 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이런 형태의 처리는 단양의 모든 『향교서재안』에 나타난다.⁸¹⁾

1876년(丙子)의 『향교서재안』에는 嚴鳳吉 등 55명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관’자와 수결이 마무리된 뒷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다. ‘老除’, ‘喪脫’, ‘移去’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16명이

77) ‘병오년’조에 실린 인물들의 생존 시기는 18세기 전반기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또 명단만 있을 뿐 다른 기록이 없어 이 자료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얻을 수 없다.

78) 『丹陽郡先生案』에서 首幕, 佐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79) 이 ‘서재안’에는 교생의 명단만 있을 뿐, 교생 개개인의 生年이나 字, 本貫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금록』과의 차이이다.

80) ‘老除’, ‘故’, ‘喪頤’, ‘自退’ 등의 표기는 『향교서재안』을 작성한 이후, 명단을 점검하여 그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 작성 후, 언제 명단을 점검했는지, 그리고 그 점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872년(壬申)의 『향교서재안』은 표지에 ‘壬申 七月’로 기재되어 있는데, 속지에는 ‘壬申 八月初五日’로 기록된 考案色 池 아무개의 서명이 있어, 이 해 7월에 명단을 작성하고 8월 초에 일일이 인원을 점검하지 않았던가 추측하게 된다. 다른 ‘서재안’에 나타나는 ‘老除’, ‘喪頤’ 등의 표기도 명단을 작성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했던 것으로 보인다.

81) 향교 학생에 대한 관에서의 관리는 단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국 향교 교생의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수령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였다.

다. 이들을 뺀 인원은 39명이다.

1879년(己卯)의 『향교서재안』에는 辛鳳甲 등 57명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6명은 ‘관’자와 수결이 끝난 뒷 부분에 작은 글자로 따로 기재했다. ‘노제’, ‘이거’ 등 신상 변화가 있는 사람은 5명이다.

1881년(辛巳) 『향교서재안』에는 林完石 등 52명이 실려 있다. ‘老除’, ‘除出’, ‘移去’ 등 신상 변화가 있는 사람은 10명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남은 사람은 42명이다.

『(甲午式)西齋儒案』은 1894년에 작성했다. 명단의 첫머리에 ‘光緒二十年甲午式’이라고 표기해 두어 자료를 만든 해가 1894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權聖雲 등 47명이 실려 있다. ‘老除’, ‘移去’ 등 변화가 생긴 사람은 모두 13명이다. 『(갑오식)서재유안』은 앞서의 『향교서재안』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목을 ‘儒案’이라고 한 것, 그리고 교생에 관한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기재한 점이 그것이다. 교생 정보의 경우에는, 한 칸을 三分하여 이름, 생년, 거주지를 적어 두었다.⁸²⁾ ‘유안’으로 표기하던 방식은 이전에도 이미 관행되고 있어 새롭지는 않지만, 교생 정보 수록 양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아마도 이 해에 있었던 甲午改革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의 최고의 강점은 이 책에 적혀 있는 ‘生年’을 통해 교생들의 당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1894년 현재 교생의 나이는 19세부터 48세에 걸쳐 있었다.⁸³⁾

이상 정리한 대로 교생안은 현재 19세기 후반 약 20년간의 기록만 남아 있다. 『청금록』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인물들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 된다. 현존하는 자료로만 본다면 관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생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전에 규정된 군 지역 향교의 定額과 비교하면 정원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정리한 사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각 년도별 ‘西齋案’의 비교>

년도	記名총수(A)	有故者(B)	A-B	비고
壬申 (1872)	58	12	46	
丙子 (1876)	55	16	39	4명은 ‘官’字 手決 뒷 부분에 기록, ‘移去’ 기록 다수
己卯	57	5	52	6명은 ‘官’字 手決 뒷 부

82) 『(갑오식) 서재유안』의 첫 장의 형식과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徐命錫	朴聖哲	盧有範	權聖雲	光緒二十年
庚申生	癸丑生	丙午生	丙辰生	甲午式
居安洞	居上津	居德尙洞	居坪洞	

83) 金聖哲은 1875년생으로 19세, 盧有範은 1846년생으로 48세이다.

(1879)				분에 기록. 거주지 표기
辛巳 (1881)	52	10	42	
甲午 (1894)	47	13	34	기재 양식의 변화

‘서재안’은 1872년부터 1894년까지 모두 다섯 차례 작성되었다. 처음에는 그 작성 기간이 2, 3년 간격이었지만 다섯 번째 ‘서재안’은 네 번째와 13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들 각 ‘서재안’에 기록된 인물들은 서재안 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 두 번 연속 혹은 세 번 연속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양 서재안의 등록자만 단순 비교했다. <표4>의 각 ‘西齋案’ 등재 교생의 연속 : 신규 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표2 각 ‘西齋案’ 등재 교생의 연속 : 신규 비>

교생수 \년도	壬申 (1872)	丙子 (1876)	己卯 (1879)	辛巳 (1881)	甲午 (1894)
기명 총수	58	55	57	52	47
전 회에 이어 연속하여 기록되는 교생	-	34	30(31)*	37(38)**	8
연속하는 교생과 신규 교생의 비	-	34 : 21	30 : 27	37 : 15	8 : 39

*1876년에는 梁雲으로, 1879년에는 梁雲伊로 기재된 인물이 있는데,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동일인으로 보면 31명이 된다.

**1879년에는 張秀濤, 1881년에는 張壽洪으로 기재된 인물이 있다.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보면 38명이 된다.

1876년 ‘서재안’의 경우 기명 총수로 따져본다면, 1872년에 등재되었던 인물은 34명이고 신규는 21명이다. 연속 : 신규의 비율은 61:39이다. 1879년 ‘서재안’에는 연속하는 인물이 30명이고 신규는 27명이다. 연속 : 신규의 비율은 52 : 48이다. 1881년 ‘서재안’에는 연속하는 인물이 37명이고 신규는 15명이다. 연속 : 신규의 비율은 71 : 29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50~70% 정도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하여 교생으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교체의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1894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1894년 ‘서재안’에는 연속하는 인물이 8명이고 신규는 39명이다. 연속 : 신규의 비율은 17 : 83이다. 이는 작성 간격이 13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향교 교생으로 등재되었던 인물 가운데는 鄉錄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향록은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 유력자들의 명단이므로 여기에 양민 신분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터인데, 1872년의 『향교서재안』에 등재되어 있던 黃固執⁸⁴⁾이란 인물은 『丹丘新鄉錄』⁸⁵⁾의 癸巳年條(1893)에 추록되어 있다. 그는 1876년의 『향교서재안』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고, 또 ‘老除’가 부기되어 있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향안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신상정보는 본관이 平海人이며 字는 允中, 癸卯年에 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례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향교에서 교육받던 평민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향교집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평민 신분의 교생이 지역 양반들의 명부에 포함되는 사실은 한말 조선사회에 일고 있던 변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살핀 대로 조선후기 단양 지역의 교육은 군수, 향교, 서원·사우 3자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군수는 지역 전체의 교육 진흥을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향교는 서원·사우와 더불어 실제 교육을 구현하는 장이었다. 향교는 양민·평민과 연관하여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약 50명을 전후한 인원이 교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續大典』에서 募入校生の 정원이 40명으로 규정되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⁸⁶⁾ 이들 향교에 등록된 인물들은 그 기본 목적이 양역을 피하고자 함에 있었고 유교 교육을 직접 받지는 않았겠지만, 유교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경험함으로써 향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조선에서 향교는 유교 교육의 최 일선 조직이었다. 조선 정부는 정치의 成敗·得失은 학교에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전국의 군현에 향교를 설치하고 그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였다. 수령에게는 守令七事의 이름으로 향교 교육을 책임지도록 했고, 향교 학생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특권을 부여했다. 토지와 노비 또한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17세기 이후로 향교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교수와 훈도 등 향교 교육 전담자의 파견이 중단되었고 토지의 지원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유교 교육기관으로서의 향교가 갖는 위상이 약화되었다. 書院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향교의 위상 약화는 향교 학생들의 신분변화에도 맞물려 있었다. 향교가 양민들의 피역처로 구

84) 1876년의 『鄉校西齋案』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老除’라고 표시하고 있다.

85) 이 책자는 1765년(乙酉, 영조 41)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해당자를 계속 추록하였다. 현존하는 『鄉錄』과 함께 조선후기 단양 지역의 향촌 사정을 이해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86) 『續大典』, 禮典, 雜令, “募入人鄉校四十名 賜額書院二十名定額”.

실하게 되며, 양민·서얼들이 교생으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향교의 구성원은 양반의 동재생과 양민·서얼의 서재생으로 구별되었다.

양민들에게 서재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곳으로 피역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양민 가운데서도 가산이 조금 넉넉한 자, 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또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교생에게 주어진 특권을 활용,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부류들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향교는 교육 기능은 거의 상실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교 이념을 펼치는 중심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유교적 祭禮의 정기적인 실행 자체가 유교 이념을 펼치는 의식이었거니와, 조선후기 정부에서는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향교 조직을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영·정조대,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향교에서 『소학』 교육을 강화하려 하였다.

영·정조대의 향교를 통한 유교 학습의 강화, 이데올로기 보급을 위한 노력은 19세기에 오면 그다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세도정치기의 느슨해진 기강이 향교 운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향교를 거점으로 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유지하려는 지방 세력이 정부의 향교 대책에 대해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순조대, 豊德을 松都에 합병하고 향교를 폐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나오자 풍덕의 유생들이 향교를 다시 세운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 그것인데, 이 일은 국가 이데올로기 전파의 핵심 기구 통폐합을 두고 지방 유생들이 적극 반대하는 점을 보이는 점에서는 보기 드문 변고였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향교는 조선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유교 이념 보급의 제 일선에 있는 기구였다. 향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그러나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 향교는 조선후기 사회에 구축된 모든 이해의 관계망이 작동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 조선후기의 향교는 정부와 향촌민, 양반과 평민, 양반 내 적자와 서자 사이의 갈등이 직접 드러나는 곳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 정치적 의견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했다. 향교는 교육 기관, 유교 이념의 전파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사회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가 응축되고 또 분출하는 그러한 곳이었다.

단양의 향교 운영 실태는 군수의 역할, 『청금록』, 교생의 ‘서재안’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이 시기 향교 운영의 책임자는 군수였는데, 단양에서는 영조 정조 순조대 재임했던 인물들에게서 향교의 중수·중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 행정의 강화, 지방에서의 교육 진흥에 많은 힘을 쏟았던 이 시기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모습으로 이해된다.

단양에 남아 있는 『청금록』은 현재 序文이 있는 책과 없는 책, 두 종류인데, 18세기 후반부터

1850년대까지의 단양 지역 양반 교생들에 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책자들은 조선후기 단양지역에 거주했던 주요 양반들의 명단을 망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양 향교의 교생과 관련한 자료는 4종의 ‘서재안’이다. 이들 자료는 각기 시기를 달리하며 작성되었는데, 19세기 후반 약 20년간의 사정을 담고 있다. 『청금록』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인물들을 담고 있는 것과 비교 된다. 각 서재안별로 등재되는 교생의 연속 : 신규 비를 따져보면, 대체로 50~70% 정도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하여 교생으로 등재되고 나머지는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생의 교체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었다. 한편, 향교 교생으로 등재되었던 인물 가운데는 『鄉錄』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다. 단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향교에서 교육받던 평민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말 조선사회에 일고 있던 변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2009.12.16, 심사시작:2009.12.17, 심사완료:2010.01.27]

주제어: 지역교육, 향교, 단양지역, 군선생안(郡先生案), 청금록(靑衿錄), 서재교생안(西齋校生案)

<ABSTRACT>

The local Education and Danyang Hyangyo in the late Choson Dynasty

Jeong, Ho-hun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 Education in the late Choson Dynasty, as well as the manner on which this work was operated in Danyang district.

Hyangyo(鄕校) was the first educational organization to spread Confucianism which lead Choson society into good order. But its intention was not adequate. On the contrary, Hyangyo was the field that interests of many social stratum were conflict with. Yangmin(良民) and Seoryu(庶流) strived to obtain a upper position in this place, the Government and Yangban(兩班) made a strenuous effort to bear rule over this. Hyangyo was educational structure, in actual fact, this was the place which political energy was erupted.

We can get a knowledge of the actual operating state of Danyang Hyangyo through three materials -『Gunseonan(郡先生案)』, 『Cheong-gumrok(靑衿錄)』, 『Seojae-gyosangan(西齋校生案)』. These were written out during the 18th 19th centuries. These include secret of Danyang district's education and social change.

key word : local education, Hyangyo(鄕校), Danyang district, 『Gunseonan(郡先生案)』, 『Cheong-gumrok(靑衿錄)』, 『Seojae-gyosangan(西齋校生案)』